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백지신탁 현황 정보 비공개에 이의신청 제기
날 짜 2026. 6. 19.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백지신탁 현황 정보 비공개에 이의신청 제기

백지신탁 정보 비공개, 외부감시와 검증 가로 막는 것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는 어제(18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백지신탁 및 처분현황은 이해충돌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대부분 매각되지 않은채 임기 종료나 퇴임 후 그대로 돌려 받고 있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받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본, 공개대상 공직자의 주식(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본 등입니다.

3. 그러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사실상 전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우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보를 찾아보라’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연장신청서나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여부 등이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4.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관보’가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사본입니다. 단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신탁재산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청구한 제3자인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며 공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큼니다.
5.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제28조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내세워 비공개처분하였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보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공직자의 등록재산 정보로 제14조 비밀업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처분은 같은 내용과 취지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후퇴입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 신탁 목록, 기관에서 게재한 관보 13건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7.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붙임. 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목별 처리결과와 비공개근거

청구항목	정부 처리결과	정부 비공개근거	국회 처리결과	국회 비공개근거
①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관보안내 (사실상비공개)		비공개	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②처분시한연장 신청서 사본	비공개	정보공개법 9조1항6호	비공개	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③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사본	관보안내 (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 (사실상비공개)	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④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사본	비공개	정보공개법 9조1항6호	비공개	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⑤신탁계약해지상황보고서 사본	비공개	정보공개법 9조1항6호	비공개	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⑥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신고·처분 내역	관보안내 (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 (사실상비공개)	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⑦처분시한연장 신청 및 연장 내역	비공개	제도 취지 위반 우려	비공개	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⑧연도별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	관보안내, 타기관 소관		-	-

<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목별 처리결과와 비공개근거>

▣ 첨부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 첨부 2.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끝.